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781

발의연월일: 2021. 7. 28.

발 의 자:위성곤·이해식·윤재갑

진성준 • 조응천 • 맹성규

최인호 • 유준병 • 소병철

이규민 • 이개호 • 양정숙

김원이 의원(13인)

제안이유

최근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이 해양 생태계 및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고, 해양플라스틱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환경총회, G20 정상회의 등 국제사회의 논의도가속화되고 있음.

연간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페어구 · 부표가 바다에 유실되어 미세플라스틱 오염, 유령어업(Ghost Fishing), 선박사고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나, 광범위한 관리해역 및 고 가의 수거·처리 비용 등으로 인해 수거에 한계가 있음.

또한, 유실된 페어구·부표는 발생 원인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무단투기 단속도 어려워 페어구·부표의 유실을 막기 위한 규제적 수단은실질적 집행에 한계가 있어 어업인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인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필요함.

이에 어구·부표가 폐기된 후 유실 또는 방치되지 않고 적절한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로 유입되도록 잠재적으로 해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어구·부표의 출고·수입가격에 보증금을 추가하되 어구·부표를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어구 · 부표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보증금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어구·부표의 범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조(정의)에 어구 및 부표의 정의를 추가함.

나. 어구·부표 보증금제 신설(안 제15조의2)

어구·부표(이하 "어구등"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어구보증금 환급문구가 표시된 어구등을 반환할 경우 어구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어구보증금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구등의 생산·수입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 어구보증금관리센터 등 참여주체의 의무를 명시함. 또한 어구보증금제가 적용되는 어구등의 종류, 어구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다. 미환급보증금의 관리(안 제15조의3)

어구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미환급보증금)의 용도를 법률에 명 시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로 하여금 미환급보증금의 사용계획과 실적을 매년 보고토록 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미환급 보증금의 산출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 라.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지정·운영 근거 마련(안 제15조의4)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지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지정·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 마. 국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29조제2항) 국가는 어구등의 회수율 제고 등 원활한 어구보증금제 관리·운영 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바. 보증금대상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39조제2항)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률 제 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어구"란 「수산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어구를 말한다
- 9. "부표"란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부표를 말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어구·부표의 회수 촉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부표(이하 "어구등"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어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어구등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 또는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어구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어구보증금액은 어구등의 출고 또는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어구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보증금대 상사업자"라 한다)는 어구등을 구입하는 자가 지급한 어구보증금을 제15조의4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여야 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반환된 어구등을 확인한 후 어구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어구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 ③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어구보증금 취급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취급수수료는 물가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 취급수수료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사업대 상자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에 어 구보증금 환급 관련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⑤ 어구보증금 이관, 어구등의 반환 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3(미환급보증금의 관리) ①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환급보증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1. 어구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 2. 어구등의 보관, 회수거점 등 관련시설의 설치 · 운영
 - 3. 어구등의 효율적 회수와 처리 방안의 연구·개발
 - 4. 전년도에 받은 어구보증금액 보다 어구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 5. 어구등의 회수에 드는 비용
- 6. 취급수수료 지급
- 7. 어구보증금과 취급수수료의 집행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 8. 어업인 등 지역주민 지원사업
- 9.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환급보증금의 사용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미환급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4(어구보증금관리센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구보증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 1.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ㆍ관리
 - 2.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취급수수료의 지급 · 관리
 - 3. 제15조의3에 따른 미환급보증금의 관리
 - 4. 기타 어구보증금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 ③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 부렁으로 정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어구등의 회수율 제고 등 원활한 어구보증금제 관리·운영 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어구보증금을 이관하지 아니한 자
- 2.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판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어구보증금의 환급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제2조(정의)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어구"란 「수산업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어구를 말한다.
<u><신 설></u>	9. "부표"란 어업인 또는 양식업
	자가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부 표를 말한다.
<신 설>	제15조의2(어구·부표의 회수 촉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부표(이하 "어구등"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어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어구등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 또는 수입가격하는 별도의 금액(이하 "어구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어구보증금액은 어구등의 출고 또는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금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어구 등을 구입하는 자가 지급한 어구보증금을 제15조의4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여야 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반환된 어구등을 확인한 후 어구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어구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③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보증 금대상사업자에게 어구보증금 취급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 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취급수수료는 물가 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 취급수수료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사업대상자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어구보증금이 포함된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제공하여야 하며, 어구보증금이 포함된어구등에 어구보증금 환급 관련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어구보증금 이관, 어구등의

<신 설>

반환 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 시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5조의3(미환급보증금의 관리)
 ①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제15
 조의2제2항에 따라 어구보증금
 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
 환급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1. 어구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홍보
 - 2. 어구등의 보관, 회수거점 등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3. 어구등의 효율적 회수와 처리 방안의 연구·개발
 - 4. 전년도에 받은 어구보증금액보다 어구보증금으로 지급한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보전(補塡)
 - 5. 어구등의 회수에 드는 비용
 - 6. 취급수수료 지급
 - 7. 어구보증금과 취급수수료의 집행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 8. 어업인 등 지역주민 지원사업
 - 9.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을 위 한 활동
 -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매년

<신 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환급보 증금의 사용계획 및 실적을 보 고하여야 한다.

③ 미환급보증금의 산출, 사용 계획 및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하 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어구보증금관리센터)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구보증 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 1.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어구 보증금의 환급・관리
- 2.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취급 수수료의 지급・관리
- 3. 제15조의3에 따른 미환급보 증금의 관리
- 4. 기타 어구보증금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 ③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① 제29조(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①

(생략)

<신 설>

② (생략)

③ (생략)

제39조(과태료) ① (생 략) <신 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 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현행과 같음)

- ② 국가는 어구등의 회수율 제고 등 원활한 어구보증금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 제3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어구보증금을 이관하지 아니 한 자
 - 2.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판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지 않거나 어구보증금의 환급 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